

**SUPERIOR COURT OF CALIFORNIA, COUNTY OF LOS ANGELES
JUVENILE COURT**

**캘리포니아주 상급법원, 로스앤젤레스 카운티, 소년법원
복지기관법 제 366.26조에 따른 법원 심리 명령에 대한 권리 공지
(캘리포니아주 법원 규칙 5.590)**

복지기관법 (WIC) 제366.26조에 따라 귀하 및 귀하의 자녀가 관여된 사건에 대한 심리가 결정되었습니다. 제366.26조는 “친권 종료 혹은 법원의 보호를 받기로 판결된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인 설정에 대한 심리”입니다.

제366.26조에 따른 친가정 복귀 종료 및 심리 결정 명령에 대한 항소권을 보존하시려면, *영장 청원 제출 의향서 및 기록 요청서* (캘리포니아주 법원 규칙 8.450) (양식 JV-820) 그리고 특별 영장 청원서 (캘리포니아주 법원 규칙 8.452 & 8.456) (양식 JV-825), 또는 기타 특별 영장 청원서 (캘리포니아주 규칙 5.590(b))를 제출하여 특별 영장을 요청해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.

*영장 청원 제출 의향서 및 기록 요청서 (양식 JV-820)*는 제366.26조에 의거한 심리 결정 명령일로부터 7일 이내, 혹은 임시 판사가 아닌 심판원이 명령을 내렸을 경우, 규칙 5.540에 따라 심판원이 최종 명령을 내린 지 7일 이내에, 반드시 서기실에 제출되어야만 합니다. 심리 결정 명령일은 법원이 구두 또는 서면 기록으로 명령을 명시한 날짜로, 둘 중 이른 날짜를 말합니다. 귀하가 본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았을 경우 제출 기간이 5일 늘어납니다. 캘리포니아주 법원 규칙 5.590(b)에 따라 앞서 언급한 양식이 본 문서에 첨부되어 있습니다(우편 송신의 경우). 제366.26조에 따른 심리 명령 결정에 항소하려면, 아래 설명된 두 개의 양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.

영장 청원 제출 의향서 및 기록 요청서 양식 (JV-820) 또는 기타 영장 청원 제출 의향서 및 기록 요청서가 서기실에 제출되어야 합니다(주소: Edmund D. Edelman Children’s Courthouse, 201 Centre Plaza Drive, Monterey Park, California, 91754, Room 2700). 서기실 항소 부서의 전화번호는 (323) 307-8098입니다. 영장 청원 제출 의향서에는 제366.26조에 의거 심리 명령 결정을 일으킨 심리의 모든 날짜가, 알려져 있다면, 반드시 포함되어야만 합니다.

영장 청원서-소년법원 양식 (JV-825) 또는 다른 특별 영장 청원서는 반드시 300 South Spring Street, Los Angeles, California 90013, North Tower 2층에 위치한 재심 법원인 상고법원에 직접 제출되어야만 합니다. 상고법원의 전화번호는 (213) 830-7000입니다.

주: *영장 청원서를 제출하지 않으면, 복지기관법 제366.26조에 따라 심리에서 결정된 판결에 항소를 제기할 권리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. 영장 청원서를 스스로 제출할 수 있다 해도,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실 것을 권고합니다.*